



제371회 임시회
2019. 3. 7.(목)

- 2019년도 제1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 -

# 검 토 보 고 서

(재난안전실)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# 목 차

## 재난안전실 소관

### □ 2019년도 제1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

#### 1. 세입예산

#### 2. 세출예산

- 안전정책과
- 사회재난과
- 자연재난과

#### 3. 검토의견

- 재난안전실 소관 -

## 2019년도 제1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

### 1. 세 입 예 산

#### 가. 총 괄

-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.10%인 13억 7,200만원 증액된 1,266억 2,0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,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4조 3,924억 9,025만원의 2.88%에 해당하는 규모임

#### 《소관별 세입예산 규모》

(단위 : 천원)

소 관 별	예 산 액	기 정 예산액	증 감	
			금 액	비율 (%)
계	126,620,654	125,248,654	1,372,000	1.10
안전정책과	4,249,252	2,877,252	1,372,000	47.68
사회재난과	108,902	108,902	-	0.00
자연재난과	122,262,500	122,262,500	-	0.00

#### 나. 재원별 현황

- 세외수입 1.4%, 지방교부세 3.2%, 보조금 83.5%,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1.9%로 구성되어 있음
-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50.81%인 13억 7,200만원 증액된 40억 7,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,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교부세 (안전분야) 반영내역임

-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과 변동없는 1,057억 4,865만원을 편성 하였지만, 추풍령천 계룡지구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및 백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등에 대한 변동된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반영 내역임.

《재원별 현황》

(단위 : 천원)

과 목	예 산 액		기 정 예산액		증 감	
	금 액	구성 (%)	금 액	구성 (%)	금 액	비율 (%)
합 계	126,620,654	100	125,248,654	100	1,372,000	1.10
세외수입	1,800,000	1.4	1,800,000	1.4	-	0.00
지방교부세	4,072,000	3.2	2,700,000	2.2	1,372,000	50.81
보조금	105,748,654	83.5	105,748,654	84.4	-	0.00
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	15,000,000	11.9	15,000,000	12.0	-	0.00

## 2. 세 출 예 산

### 가. 총 괄

-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.25%인 75억 8,586만원 증액된 1,861억 2,2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,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4조 3,924억 9,025만원의 4.23%에 해당하는 규모임

#### 《소관별 세출 예산 규모》

(단위 : 천원)

부 서 별	예 산 액	%	기정예산액	%	증 감	%	비고
계	186,122,864	100	178,536,998	100	7,585,866	4.25	
안전정책과	1,624,882	0.9	1,596,682	0.9	28,200	1.77	
사회재난과	529,702	0.3	535,536	0.3	△5,834	△1.09	
자연재난과	183,968,280	98.8	176,404,780	98.8	7,563,500	4.29	

- 재정별로 살펴보면,
  - 정책사업은 8개부문 20개 단위사업 1,623억 4,91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.99%인 15억 8,436만원 증액됨
  - 행정운영경비는 2억 2,804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.66%인 150만원 증액됨
  - 재무활동은 235억 4,562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4.20%인 60억원 증액됨

## 나. 소관별 내역

### 【 안전정책과 】

- 안전정책과는 도민안전역량강화 및 민방위 및 위기대응에 기정 예산 대비 1.77%인 2,820만원 증액된 16억 2,488만원을 계상하였고,
- 주요 내용은 안전감찰 추진에 820만원(순증) 증액, 총무시설 보수공사 실시 설계 등 비상대비에 2,000만원(14.66%)을 증액 편성함

### 《단위사업별 내역》

(단위 : 천원)

정책사업	단위사업	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	증감률 (%)
합 계		1,624,882	1,596,682	28,200	1.77
도민안전 역량강화	지역안전관리	274,200	274,200	-	0.00
	범도민안전의식개선 및 안전문화정착	540,976	540,976	-	0.00
	안전감찰 추진	8,200	-	8,200	순증
민방위 및 위기대응	민방위교육 훈령강화	130,971	130,971	-	0.00
	민방위 시설장비확충	95,308	95,308	-	0.00
	비상대비	156,414	136,414	20,000	14.66
	민방위경보 운영관리	245,695	245,695	-	0.00
통합방위 태세 확립	예비군 육성지원	82,870	82,870	-	0.00
행정운영경비	기본경비	90,248	90,248	-	0.00

**【 사회재난과 】**

- 사회재난과는 재난 예방 및 관리에 기정 예산 대비 △1.09%인 583만원 감액된 5억 2,970만원을 계상하였고,
-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요원 보상금 등 재난상황 관리에 583만원 (△4.35%)을 감액 편성함

《단위사업별 내역》

(단위 : 천원)

정책사업	단위사업	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	증감률 (%)
합	계	529,702	535,536	△5,834	△1.09
재난 예방 및 관리	재난안전 관리	163,017	163,017	-	0.00
	안전점검 운영	120,902	120,902	-	0.00
	재난상황 관리	128,132	133,966	△5,834	△4.35
도민의 민생안전 구축	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충복실현	50,780	50,780	-	0.00
행정운영경비	기본경비	66,871	66,871	-	0.00

**【 자연재난과 】**

- 자연재난과는 재난예방 및 복구 및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조성 등에 기정 예산 대비 4.29%인 75억 6,350만원 증액된 1,839억 6,828만원을 계상하였고,
- 주요 내용은 하천정비사업 등 하천유지관리사업에 14억 2,000만원 (4.39%),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지출에 60억원(34.20%)을 증액 편성함

## 《단위사업별 내역》

(단위 : 천원)

정책사업	단위사업	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	증감률 (%)
합	계	183,968,280	176,404,780	7,563,500	4.29
재난예방 및 복구	재난대비 계획수립	29,500	29,500	-	0.00
	재난예방 및 유지관리	333,530	191,530	142,000	74.14
	재해위험지구정비	52,642,700	52,642,700	-	0.00
자연친화적 하천환경조성	하천재해 예방사업	71,480,000	71,480,000	-	0.00
	하천정비기반구축	1,200,000	1,200,000	-	0.00
	하천유지관리사업	33,766,000	32,346,000	1,420,000	4.39
하천사용료수입 관리	하천사용료징수교부	900,000	900,000	-	0.00
행정운영경비	기본경비	70,925	69,425	1,500	2.16
재무활동	내부거래지출	23,545,625	17,545,625	6,000,000	34.20

### 3. 검토의견

-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예산안은 민방위 및 위기대응, 재난 예방 및 관리,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 등 재난걱정 없는 도민중심 안심충북 실현을 위한 예산 편성임



- 편성 내역을 보면 비상대비, 하천유지관리사업,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난 예방 사업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됨
  
- 다만,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(주요사업 설명자료)
  - 199쪽(p7) 현장 중심 안전감찰 추진에 따른 점검 차량 임차의 필요성 및 차량유지비용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  - 201쪽(p10) 폭염대책비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계상되었는데, 선제적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폭염저감시설(그늘막, 쿨링포그 등) 설치·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  - 207쪽(p17)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대폭 늘어난 이유가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이 증가해서 관련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법정적립액이 증가한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